창원명곡 두산아트 입주자 모집공고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6조에 의거 창원시 주택과 제 7115호 (2008.05.29)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명서동 27번지 외 4필지

■ 대 지 면 적 : 117,159 ㎡

■ 공 급 규 모 : 지하 2층, 지상 15층 아파트 28개동 총 1,404세대 및 주택복리시설 중 일반분양 653세대(3차 특별공급 20세대 포함)

■ 공 급 대 상

(면적단위 : ㎡)

구 분	아파트코드	주택공급번호 (시 일련번호)	주택형 (㎡)	세대당 계약 면적 공급면적 전 용	주거공용	소 계	기타 공용 면적	계약 면 적	세대당 대지지분	총 수량	공급 세대수 (세 대) 공급 합계	특별 공급	일반 기관	일반 주택
민영주택	21953 - 01	20080005391-01	113.1482	84.9900	28.1540	113.1440	40.0430	153.1870	51.9020	12	6	-	6	2
	21953 - 02	20080005391-02	116.8804	112.2600	27.7800	140.0400	54.9500	194.9900	62.6380	15	3	2	1	-
	21953 - 03	20080005391-03	145.4290	118.1000	27.2690	145.4290	57.3930	202.8220	64.0150	15	1	-	-	-
	21953 - 04	20080005391-04	165.2030	137.9600	27.3610	165.2040	66.4630	232.1670	74.6880	15	64	5	30	29
	21953 - 05	20080005391-05	165.2435	137.9600	27.2810	165.2410	67.0210	232.2620	74.7530	15	36	-	18	18
	21953 - 06	20080005391-06	196.7303	167.4100	29.3630	196.7730	81.3350	277.0720	90.7180	15	115	3	58	56
	21953 - 07	20080005391-07	198.2800	167.9100	30.1060	198.2860	81.6910	279.9770	91.1150	15	136	8	64	64
	21953 - 08	20080005391-08	246.4540	189.3500	35.1140	224.4640	91.9740	316.4380	102.5840	15	245	1	122	122
	21953 - 09	20080005391-09	257.6500	219.9600	37.9910	257.9510	126.6940	384.3470	119.0550	15	45	-	22	22
합 계											653	20	319	314

■ 공 급 금 액

분 양 가 격

구분/층수	공급 세대수	층 별	대 지 비	건 축 비	계	총 분양금액 (세 대 별)	계약금 (세 대 별)	중도금 (세 대 별) 1회 (2008. 6 월)	2회 (2008. 12 월)	3회 (2009. 3 월)	4회 (2009. 6 월)	5회 (2009. 9 월)	6회 (2008. 12 월)	잔금 (세 대 별) 입주지정일
1층	1	113,788	37,788,000	62,236,000	300,991,000	300,991,000	35,598,000	35,598,000	35,598,000	35,598,000	35,598,000	35,598,000	106,796,000	
1층	3	4~5	173,716,000	206,183,000	379,909,000	379,909,000	37,990,000	37,990,000	37,990,000	37,990,000	37,990,000	37,990,000	113,979,000	
1층	2	6~8	173,716,000	209,615,000	383,331,000	383,331,000	38,333,000	38,333,000	38,333,000	38,333,000	38,333,000	38,333,000	115,000,000	
1층	1	12	173,716,000	230,120,000	403,836,000	403,836,000	40,386,000	40,386,000	40,386,000	40,386,000	40,386,000	40,386,000	121,165,000	
1층/8F	1	4	212,628,000	278,784,000	491,412,000	491,412,000	49,142,000	49,142,000	49,142,000	49,142,000	49,142,000	49,142,000	147,428,000	
1층/8F	1	6	213,838,000	283,180,000	496,918,000	496,918,000	49,692,000	49,692,000	49,692,000	49,692,000	49,692,000	49,692,000	149,076,000	
1층/8F	1	11	212,628,000	296,345,000	508,973,000	508,973,000	50,897,000	50,897,000	50,897,000	50,897,000	50,897,000	50,897,000	152,694,000	
1층/8F	1	9	214,258,000	282,854,000	497,112,000	497,112,000	49,711,000	49,711,000	49,711,000	49,711,000	49,711,000	49,711,000	149,135,000	
1층/8F	2	1	249,981,000	259,817,000	509,798,000	509,798,000	50,979,000	50,979,000	50,979,000	50,979,000	50,979,000	50,979,000	152,945,000	
1층/8F	3	1	249,981,000	269,813,000	519,794,000	519,794,000	51,979,000	51,979,000	51,979,000	51,979,000	51,979,000	51,979,000	155,941,000	
1층/8F	2	2~3	249,981,000	279,809,000	529,790,000	529,790,000	52,979,000	52,979,000	52,979,000	52,979,000	52,979,000	52,979,000	158,937,000	
1층/8F	2	2~3	249,981,000	284,807,000	534,788,000	534,788,000	53,478,000	53,478,000	53,478,000	53,478,000	53,478,000	53,478,000	160,442,000	
1층/8F	2	6~8	249,981,000	289,805,000	539,786,000	539,786,000	53,978,000	53,978,000	53,978,000	53,978,000	53,978,000	53,978,000	161,945,000	
1층/8F	2	12	249,981,000	299,801,000	549,782,000	549,782,000	54,978,000	54,978,000	54,978,000	54,978,000	54,978,000	54,978,000	164,936,000	
1층/8F	10	4~8	249,981,000	309,797,000	559,778,000	559,778,000	55,977,000	55,977,000	55,977,000	55,977,000	55,977,000	55,977,000	167,933,000	
1층/8F	9	4	252,198,000	314,795,000	566,993,000	566,993,000	56,699,000	56,699,000	56,699,000	56,699,000	56,699,000	56,699,000	170,097,000	
1층/8F	10	6~9	249,981,000	319,793,000	569,774,000	569,774,000	56,977,000	56,977,000	56,977,000	56,977,000	56,977,000	56,977,000	170,931,000	
1층/8F	16	10~15	249,981,000	329,790,000	579,771,000	579,771,000	57,977,000	57,977,000	57,977,000	57,977,000	57,977,000	57,977,000	173,931,000	
1층/8F	16	16	249,981,000	339,786,000	589,767,000	589,767,000	58,976,000	58,976,000	58,976,000	58,976,000	58,976,000	58,976,000	176,928,000	
1층/8F	6	10~15	249,981,000	349,782,000	599,763,000	599,763,000	59,976,000	59,976,000	59,976,000	59,976,000	59,976,000	59,976,000	179,927,000	
1층/8F	1	16	252,198,000	359,850,000	612,048,000	612,048,000	61,204,000	61,204,000	61,204,000	61,204,000	61,204,000	61,204,000	183,612,000	
1층/8F	2	2~3	250,198,000	219,647,000	539,845,000	539,845,000	52,984,000	52,984,000	52,984,000	52,984,000	52,984,000	52,984,000	158,952,000	
1층/8F	2	2~3	250,198,000	229,644,000	549,842,000	549,842,000	53,984,000	53,984,000	53,984,000	53,984,000	53,984,000	53,984,000	161,952,000	
1층/8F	2	4~7	250,198,000	309,638,000	559,836,000	559,836,000	55,983,000	55,983,000	55,983,000	55,983,000	55,983,000	55,983,000	167,955,000	
1층/8F	9	6~14	250,198,000	319,635,000	569,833,000	569,833,000	56,983,000	56,983,000	56,983,000	56,983,000	56,983,000	56,983,000	170,952,000	
1층/8F	10	10~15	250,198,000	339,629,000	589,827,000	589,827,000	58,983,000	58,983,000	58,983,000	58,983,000	58,983,000	58,983,000	176,949,000	
1층/8F	2	15	250,198,000	349,626,000	599,824,000	599,824,000	59,982,000	59,982,000	59,982,000	59,982,000	59,982,000	59,982,000	179,950,000	
1층/8F	1	1	303,036,000	359,915,000	662,951,000	662,951,000	66,295,000	66,295,000	66,295,000	66,295,000	66,295,000	66,295,000	198,886,000	
1층/8F	9	1	303,036,000	339,936,000	642,972,000	642,972,000	64,297,000	64,297,000	64,297,000	64,297,000	64,297,000	64,297,000	192,892,000	
1층/8F	9	2~3	303,036,000	353,599,000	657,635,000	657,635,000	65,763,000	65,763,000	65,763,000	65,763,000	65,763,000	65,763,000	197,174,000	
1층/8F	9	2~3	303,036,000	359,520,000	663,556,000	663,556,000	66,355,000	66,355,000	66,355,000	66,355,000	66,355,000	66,355,000	199,065,000	
1층/8F	21	4~5	303,036,000	383,205,000	686,841,000	686,841,000	68,684,000	68,684,000	68,684,000	68,684,000	68,684,000	68,684,000	206,053,000	
1층/8F	21	6~9	303,036,000	386,242,000	689,878,000	689,878,000	68,988,000	68,988,000	68,988,000	68,988,000	68,988,000	68,988,000	206,964,000	
1층/8F	33	10~15	303,036,000	406,888,000	715,525,000	715,525,000	71,552,000	71,552,000	71,552,000	71,552,000	71,552,000	71,552,000	214,657,000	
1층/8F	3	10~15	303,036,000	424,610,000	736,298,000	736,298,000	73,629,000	73,629,000	73,629,000	73,629,000	73,629,000	73,629,000	218,887,000	
1층/8F	2	10~14	303,036,000	400,466,000	704,654,000	704,654,000	70,465,000	70,465,000	70,465,000	70,465,000	70,465,000	70,465,000	211,394,000	
1층/8F	4	10~15	303,036,000	430,573,000	734,209,000	734,209,000	73,420,000	73,420,000	73,420,000	73,420,000	73,420,000	73,420,000	220,269,000	
1층/8F	1	1	304,962,000	342,938,000	647,900,000	647,900,000	64,790,000	64,790,000	64,790,000	64,790,000	64,790,000	64,790,000	194,370,000	
1층/8F	3	3	304,962,000	360,830,000	665,792,000	665,792,000	66,579,000	66,579,000	66,579,000	66,579,000	66,579,000	66,579,000	199,741,000	
1층/8F	13	2~3	304,962,000	366,830,000	671,792,000	671,792,000	67,179,000	67,179,000	67,179,000	67,179,000	67,179,000	67,179,000	201,538,000	
1층/8F	4	4~5	304,962,000	384,825,000	689,787,000	689,787,000	68,978,000	68,978,000	68,978,000	68,978,000	68,978,000	68,978,000	206,947,000	
1층/8F	17	4~5	304,962,000	390,803,000	695,765,000	695,765,000	69,576,000	69,576,000	69,576,000	69,576,000	69,576,000	69,576,000	208,729,000	
1층/8F	17	6~9	304,962,000	396,821,000	701,783,000	701,783,000	70,178,000	70,178,000	70,178,000	70,178,000	70,178,000	70,178,000	210,537,000	
1층/8F	27	6~9	304,962,000	402,819,000	707,781,000	707,781,000	70,778,000	70,778,000	70,778,000	70,778,000	70,778,000	70,778,000	212,335,000	
1층/8F	12	10~15	304,962,000	408,818,000	713,780,000	713,780,000	71,378,000	71,378,000	71,378,000	71,378,000	71,378,000	71,378,000	214,134,000	
1층/8F	15	10~15	304,962,000	414,816,000	719,778,000	719,778,000	71,977,000	71,977,000	71,977,000	71,977,000	71,977,000	71,977,000	215,933,000	
1층/8F	2	10~15	304,962,000	432,800,000	737,762,000	737,762,000	73,777,000	73,777,000	73,777,000	73,777,000	73,777,000	73,777,000	221,333,000	
1층/8F	1	10~15	304,962,000	438,808,000	743,770,000	743,770,000	74,377,000	74,377,000	74,377,000	74,377,000	74,377,000	74,377,000	223,132,000	
2층/8F	3	1	343,349,000	423,905,000	767,274,000	767,274,000	76,727,000	76,727,000	76,727,000	76,727,000	76,727,000	76,727,000	230,185,000	
2층/8F	12	1	343,349,000	430,715,000	774,064,000	774,064,000	77,406,000	77,406,000	77,406,000	77,406,000	77,406,000	77,406,000	232,222,000	
2층/8F	12	2~3	343,349,000	451,085,000	794,434,000	794,434,000	79,443,000	79,443,000	79,443,000	79,443,000	79,443,000	79,443,000	238,333,000	
2층/8F	27	2~3	343,349,000	457,875,000	801,224,000	801,224,000	80,122,000	80,122,000	80,122,000	80,122,000	80,122,000	80,122,000	240,370,000	
2층/8F	27	4~5	343,349,000	463,245,000	806,594,000	806,594,000	80,659,000	80,659,000	80,659,000	80,659,000	80,659,000	80,659,000	241,978,000	
2층/8F	30	4~5	343,349,000	485,035,000	828,384,000	828,384,000	82,838,000	82,838,000	82,838,000	82,838,000	82,838,000	82,838,000	248,516,000	
2층/8F	12	6~9	343,349,000	491,825,000	835,174,000	835,174,000	83,517,000	83,517,000	83,517,000	83,517,000	83,517,000	83,517,000	250,555,000	
2층/8F	12	6~9	343,349,000	496,815,000	840,164,000	840,164,000	84,016,000	84,016,000	84,016,000	84,016,000	84,016,000	84,016,000	252,050,000	
2층/8F	13	10~15	343,349,000	506,495,000	849,844,000	849,844,000	84,985,000	84,985,000	84,985,000	84,985,000	84,985,000	84,985,000	254,959,000	
2층/8F	12	10~15	343,349,000	512,195,000	855,544,000	855,544,000	85,554,000	85,554,000	85,554,000	85,554,000	85,554,000	85,554,000	256,666,000	
2층/8F	1	10~15	343,349,000	532,565,000	875,914,000	875,914,000	87,591,000	87,591,000	87,591,000	87,591,000	87,591,000	87,591,000	262,777,000	
2층/8F	3	10~15	343,349,000	532,565,000	875,914,000	875,914,000	87,591,000	87,591,000	87,591,000	87,591,000	87,591,000	87,591,000	262,777,000	
2층/8F	1	16	345,566,000	539,555,000	885,121,000	885,121,000	88,510,000	88,510,000	88,510,000	88,510,000	88,510,000	88,510,000	265,531,000	
2층/8F	1	1	398,310,000	521,375,000	919,685,000	919,685,000	91,968,000	91,968,000	91,968,000	91,968,000	91,968,000	91,968,000	275,906,000	
2층/8F	3	1	398,310,000	539,200,000	937,510,000	937,510,000	93,751,000	93,751,000	93,751,000	93,751,000	93,751,000	93,751,000	281,253,000	
2층/8F	2	2~3	398,310,000	552,591,000	950,901,000	950,901,000	95,090,000	95,090,000	95,090,000	95,090,000	95,090,000	95,090,000	285,270,000	
2층/8F	2	2~3	398,310,000	560,340,000	958,650,000	958,650,000	95,865,000	95,865,000	95,865,000	95,865,000	95,865,000	95,865,000	287,595,000	
2층/8F	2	4~5	398,310,000	583,726,000	982,036,000	982,036,000	98,203,000	98,203,000	98,203,000	98,203,000	98,203,000	98,203,000	294,611,000	
2층/8F	4	4~5	398,310,000	591,520,000	989,830,000	989,830,000	98,983,000	98,983,000	98,983,000	98,983,000	98,983,000	98,983,000	296,949,000	
2층/8F	4	6~9	398,310,000	599,314,000	997,624,000	997,624,000	99,762,000	99,762,000	99,762,000	99,762,000	99,762,000	99,762,000	299,286,000	
2층/8F	10	6~9	398,310,000	607,108,000	1,005,418,000	1,005,418,000	100,541,000	100,541,000	100,541,000	100,541,000	100,541,000	100,541,000	301,631,000	
2층/8F	15	10~15	398,310,000	614,902,000	1,013,212,000	1,013,212,000	101,321,000	101,321,000	101,321,000	101,321,000	101,321,000	101,321,000	303,965,000	
2층/8F	15	10~15	398,310,000	622,696,000	1,021,006,000	1,021,006,000	102,100,000	102,100,000	102,100,000	102,100,000	102,100,000	102,100,000	306,306,000	
2층/8F	1	15~15	398,310,000	653,872,000	1,052,182,000	1,052,182,000	105,218,000	105,218,000	105,218,000	105,218,000	105,218,000	105,218,000	315,655,000	
2층/8F	1	16	398,310,000	661,666,000	1,059,976,000	1,059,976,000	105,997,000	105,997,000	105,997,000	105,997,000	105,997,000	105,997,000	317,991,000	
합 계	653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등록세, 취득세가 미포함 되었으며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은 관계법령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지하주차장, 실외주차장,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기계실, 전기실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 상층에 대한 분양비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근린생활시설(단지내상가)은 상기 공급금액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상기 선납대지분 별도계약보증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며 별도계약보증이는 분양계약시 선택 계약하는 사항임
* 층수는 건축 등록, 세대 주택형의 세부 라인의 최종층에 층수임을(알)지 하는 등은 필요치 공급 기준을 1층으로 하여 층수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층별 분양가를 산정함
* 중도금은 입주후에는 전체 금융비용부담비율을 제외하여 50% 이상이 무담보 채권 기준으로 한 각 2회 이상 분할납부 분양에 , 중도금 납부기준 공정지급하며 납부일자는 입주지정 전후등장 확인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다만 동월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
* 건설원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부터 주택공급규칙 제21조 의거 입사예정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입주지정 10개월 이전일 경우에는 입주지정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입주지정 일자 이전 1년 이내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납부하여 입주하는 조건으로 분양함
* 사업주체가 정해져 대한주택보증(주)가 지정하는 시공보증사지정조건을 포함한다를 선택하는 경우는 입주자의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주하기 있는것으로 봄
* 입주 개시일 특정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점검표를 할 예정임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받으며, 향후 호수가 결정되는 시점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분양가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금등(취득세 등) 또는 추후 부가되는 실비제공비용 입주자 전원 납부시 정산할 예정임 (단,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기준)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음
* 당 아파트는 2007. 9. 1. 이후 입주모집공고 되는 민영주택으로 청약가점제를 시행함.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받으며, 향후 호수가 결정되는 시점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입주자모 · 보험일 청약신청 안내 (본 세대소개 청약신청자의 편태도울 확인 부기사항으로서 정확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일반 청약접수 기관	공공분양주택건전성을 위한 전문 청약접수 기관자
이용대상	인 터 넷	• 창원동 기산문에서 인터넷분양 세대소 이용 신청을 하신 분	• 2순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 분
	지 정 대 행	국민은행 MBank KBank BankON 세대소 이용신청을 위한 분 MBank 전용화면 중 WP본 기준 청약 접수	–
이용방법 및 절차	홈페이지	홈페이지www.kbstar.com(영측→예금→분양관→APT아파트분양→인터넷청약	청약접정 기입문제 또는 공공공제하www.apEyou.com) 접속
		※ 3순위 신청만은 홈페이지www.shinhan.com→홈페이지→주택신	※ 3순위 신청만은 홈페이지www.shinhan.com→홈페이지→주택신
	지 점	SK7 · Millers 또는 서강Branch→분양팀 주택청약→인터넷→주택청약신청	–
	전 화	ARS 1811 - 4000번 접속→분양팀 주택청약→인터넷 접속→주택청약신청	

■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1. 3차나 특별공급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0조 제6항] 20세대)

주택형㎡	145A	145B	165A	195	198	224	257	계
공급세대	2	2	2	2	2	2	2	20

- 3차나 특별공급 대상자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0조 제6항에 해당하는 자로써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8.06.07) 현재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고 만20세 이만의 자녀를 3명이상 둔 무주택세대주(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주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을 포함하여 모두 무주택세대주)세대주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함
* 분양가 산정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는 제당첨 제한기간 동안에는 신청할 수 없음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차나 모두 만한정 미만인자만 신청이가능함이며 20세이상이 해당
* 자녀 수에는 입양자녀는 포함되지 않으며, 태아(출생 되는 자녀)는 포함되지 않음
- 3차나 특별공급 세대 : 일반공급 653 세대 중 3%인 20세대(전주택형)
- 주택법령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대수, 비율 등을 관리기준에 해당하면서, 해당 호수가 입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특별공급 신청 비율시 20세대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
* 중복청약 및 당첨시 제한기간
- 3차나 특별공급 세대 : 일반공급 653 세대 중 3%인 20세대(전주택형)
- 주택법령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대수, 비율 등을 관리기준에 해당하면서, 해당 호수가 입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특별공급 신청 비율시 20세대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
* 중복청약 및 당첨시 제한기간
- 3차나 특별공급 세대 : 일반공급 653 세대 중 3%인 20세대(전주택형)
- 주택법령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대수, 비율 등을 관리기준에 해당하면서, 해당 호수가 입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특별공급 신청 비율시 20세대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
* 신청일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당시 건문주택 발표일자
* 신청일시 및 장소 : 2008.06.13 (10:00~14:00) / 당사 견본주택
* 동 · 호수 추첨일시 및 장소 : 2008.06.20 (16:00) / 당사 견본주택
* 계약체결일 : 수순 참조 당첨자 안내문
* 3차나 특별공급 배정기준 – 사회시 배정물량 지정자의 및 장소 기재

평형 및 소	배 정	배 정 기 준 기 준	정 수
계	100		
자녀수 (3명이상)	40	4자녀 이상	40
		3자녀	35
명의이	10	2명 이상	10
		1명	5
세대구성(3)	10	3세대 이상	10
		2세대	5
무주택기간(3)	20	세대주 1년이 초과 되었으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세대주 1년이 미만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5세대 시 · 도 가중치(3)(4)	20	10년 이상	20
		5년 이상~10년 미만	15
		1년 이상~5년 미만	10
		1년 미만	5

- 자녀입양이 포함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20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 명 : 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인 자녀
-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 직계존속은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세대구성 및 주민등록등본 등재 기준일 해당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세대구성에 따른 주민등록등본 등재 기준일 해당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세대구성 및 주민등록등본 등재 기준일 해당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 1순위 청약접수 기준일 : 2008년 6월 7일 (토요일) 오전 9시 부터 오후 5시까지 (단, 토요일 및 일요일은 제외)
* 1순위 청약접수 장소 : 당사 견본주택 및 인터넷 청약접수 (www.apEyou.com)
* 1순위 청약접수 방법 : 청약통장 가입은행 지점 방문 접수 (단, 토요일 및 일요일은 제외)
* 1순위 청약접수 대상자

창원명곡 두산위브 입주자 모집공고 (계 속)

▣ 발코니 확장금액

● 발코니 확장공사에 따른 공사비용(부가세포함)은 아래 표의 해당금액으로, 확장비용은 분양가에서 제외되어 있음.

(금액단위 : 원, VAT포함)

주 택 형	패 키 지	확 장 부 위	확장면적 (㎡)	확장공사비		비 고
				공 사 비	㎡당가	
113형		거실 및 전정실(안방 제외)	15.09	9,604,000	636,448	113형은 VAT 면제
145A형		상 동	22.84	13,481,000	590,236	
145B형		상 동	24.13	13,070,000	541,649	
165A형		상 동	24.73	13,620,000	550,748	
165B형		상 동	24.74	13,322,000	538,480	
195형		상 동	26.30	14,934,000	567,833	
198형		상 동	23.88	12,929,000	541,415	
224형		상 동	26.28	13,809,000	525,457	
257형		거실 및 전정실(안방 포함)	32.50	15,666,000	482,031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1. 외부 SASH → 총 분양금액에는 일반 외부샤시 비용이 제외되어 있음	2. 특기사항 – 발코니 확장공사비부가가치세 포함는 발코니 확장으로 인해 기존설치항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설치항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체결일시(정당 당첨자) : 2008.06.30.(월) ~ 2008.07.02.(수) (3 일간, 시간 : 10:00 ~ 16:30)

● 계약금 납부 및 계약체결 장소 : 당사 견본주택 [전화번호 : (055) 263 – 0050]

※ 상담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공급함.

※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등 · 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전산검색 등 청약자가 유무 판단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이후 파도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됨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신한은행 본 · 지점 무통장 입금(타행입금 불가)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 계약기간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시에는 당첨 효력이 상실됨

금 융 기 관	계 좌 번 호	예 금 주
신 한 은 행	140-007-866025	명우아파트청바지조합

▣ 선택품선 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금 융 기 관	계 좌 번 호	예 금 주
	추후 개설 (계약시 안내)	

▣ 계약시 구비사항

구 분	구 비 서 류
공 통	● 주택공급신청 접수증(수령증) (단, 인터넷, 모바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자는 제출생략) ● 계약자의 인감도장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도장 : 이때도 계약장) ● 본인 확인 및 신청자격 확인서류(가족관계, 세대주, 20세 이상여부 등),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 · 초본 1통,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며 한함), 기혼관계증명서 1통, 제외동보는 국내기소신고증 사본 1부 (또는 국내기소사실 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등), ● 계약금(수도권지역 소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1장으로 준비하시기 바람)
부적격통보를 받은세대열람사항 해당시	●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서면 – 건축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가족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상증명서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소형 · 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사항	● 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하여(배우자, 직계존 · 비속포함)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 추가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원도 (이때조계약 인감원) 1통, 계약자의 인감도장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감도장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계약체결 장소 비치)

※ 상기 제출정서류는 계약일 3개월 이내에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계약시 외국인의 구비사항은 공급신청시 구비사항과 동일함)

※ 2005. 7. 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계약조건 등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라도 다음 중 1에 해당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고,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으며, 당첨된 청약 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함.

–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한 경우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 소유자로 판명될 경우

– 1순위 당첨자 중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자

– 2002년 9월 5일 이후 청약예금(부금)에 가입한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가 아닌 자로 판명된 경우

– 1 · 2 · 3순위 당첨자 중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됨된 자 또는 기 당첨된 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중 재당첨 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자

※ 상기 기준에 의거 수택소유여부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판단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신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신원의 수택 소유 및 당첨사실을 포함이며, 금융결제원에 5년이내 재당첨여부 검색하고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는 금융결제원에 무주택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로 판명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동장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사이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제공된 계약은 취소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등정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 동정 등을 사칭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됨.

● 지정 계약기간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이때트 및 상가의 대지면적이 차후 분할로 인하여 면적이 변동됨 수 있음. (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 금액이 없음)

● 아파트의 배치 , 구조 및 동 ·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평장구역 및 단지내 병정 및 동 · 호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 여기서 정하지 이니한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7조를 적용함.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적용됨.

▣입주예정일 : 2010년 4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상업주인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상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노인실, 어린이놀이터, 문고시설, 보육시설, 주민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단지내상가) 등

▣ 융자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융자 금액은 향후 정부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사정에 의한 중도금대출 불가지는 납부 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중도금을 납부해야 함. (미납시 연체료 가산됨)

● 당사입지는 총분양금액의 40% 대출이 가능하나, 당첨된 주택의 공급금액, 개인의 신용상태 및 소득 등에 따라 대출한도가 변동될 수 있으니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람. 이에 따른 대출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된 책임은 사업주체가 지지 않음.

▣ 인터넷 · ARS · 모바일 당첨자 발표 이용안내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발표장소 등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국민은행 (국민은행에서 청약접수한 분)	금융결제원 (국민은행외의 은행에서 청약접수한 분)
인 터 넷	이 용 방 법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부동산 –분양관 –사이버청약시장 –당첨확인 –주택별 조회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인터넷청약개인고객 –당첨확인
	이 용 기 간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0일간	
전화(ARS)	이 용 방 법	먼저 이용 전화번호를 누르신 후 안내말에 따라 청약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등을 연속하여 누름	
	전 화 번 호	1588-9999 (서비스번호 : 770)	1369 (서비스번호 : 5# → 14)
	이 용 기 간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0일간	
KB모바일	이 용 방 법	SKT : MBank 접속–KB Starnet–모바일 주택청약 –PIN 입력 –당첨확인 KTF, LGT : KB뱅킹 접속–모바일 주택청약–PIN 입력–당첨확인	–
	이 용 기 간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0일간	
휴대폰문자서비스	대 상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제 공 일 시	당첨자 발표일 09: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당첨자 명단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붙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 서면통지는 하지 않은 (천하임이는 차주이 가능성 때문에 문당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 바람)

▣ 입주자 사전점검

● 도배, 도장, 가구, 타일, 주방용구, 위생기구공사 등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요령" 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유 의 사 항

● 일배 이때트는 명곡이미트장비시업조합에서 최초 사업 추진이어 창원시로부터 2006년 7월 10일 사업시행인가를 취득하고, 2006년 10월 18일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통지받은 이때트이므로, 주택법 제38조의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6항 5호의 2, 5호의 3, 5호의 4, 5호의 5 및 0호의 2의 규정은 적용 받지 않음(근거 : 주택법 부칙 제9383호(2007. 4. 2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 제577호(2007. 8. 24))

● 단지명은 사업승인 후 공부 및 이때트 측면에 "창원명곡 두산 위브"로 명시됩니다.

● 보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노인실, 어린이놀이터, 문고시설, 보육시설, 주민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단지내상가) 등

● 주택공급신청서상 단랑기로 인지됨 [거주지역명]은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확인 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명] 또는 [청]란은 명칭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 모집공고상(주택명(㎡))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방법인 제곱미터(㎡)로만 표기하였으나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평형환산방법 : 평별면적(㎡) X 0.3025 또는 평별면적(㎡) ÷ 3.3058]

● 주택공급신청서상에 청약시기 기재한 내용과 단랑기로 인지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 확인 하시기 바람.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거나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증전보다 작은 규모의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 당해 주택에 공급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지에 한하여 청약이 가능하며, 향후 다른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전에 변경하여 주시기 바람.

● 분양임정(당첨자 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시는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함.

● 신청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단, 접수 당일 접수시간 내에 한하여 취소 가능)

● 선 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20%)에 미달 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206동의 경우 인접도로 레벨로 인해 타동에 비해 바닥이 낮음으로 시야나 조망에 다소 방해 받을 수 있음.

● 입주자로 선정(3순위당첨자 포함)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이 이때트는 실 입주자를 위하여 건립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시에는 해당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처벌 받게 됨.

● 하자 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미해당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됨.

● 견본주택에 사용된 제품은 자재 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할 수 있음.

● 견본주택의 연출물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후 철거전에 시진 및 비디오로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소공도, 단지모형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모델하우스 및 현장팜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직종 평기의 결과에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주민공동시설,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 도서에 준하여 시공하므로 모델하우스에 비치된 사업승인 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세대가 속한 동,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내용은 한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고하시기 바람.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잘못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시행인가 또는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인 재건축 조합의 권점에 따른며 제반 관련된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배치상 기계/전기/발전기실 및 지하주차장의 급배기구, 정화조, 쓰레기 분리수거함 인접세대는 냄새, 소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이때트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 경비실 위치는 교통동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음.

● 입주 후 틀빌구조 변경시 건개법령에 따라 제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람.

●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 · 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이때트의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계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변동시 공급가격에 의해 정산 처리함. (단, 소수점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정산 하지 않기로 함)

● 본 이때트의 단지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을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본 단지의 명칭, 동표시, 외부색채와 외부상세 계획 등은 한하기, 색채상의 및 법규의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본 이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 본 이때트의 서비스 면식에 약간의 지이가 있을 수 있음.

● 사업승인 조건에 의하여 부지면변 도로확폭에 따른 측량결과에 의하여 대지지분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시 필요에 따라 패쇄공간이 발생될 수 있음.(계약시 확인요망)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내 비상시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진소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입면 차별화 및 현장여건에 따라 옥탑, 지붕, 측벽, 동출입구, 경비실, 문주, 부대복리시설 입면, APT 측벽문양 등의 디자인 및 색채 등이 변경될수 있음.

● 인테리어 공사는 입주자 본인의 판단에에 상치하여야 함.

● 확장 공사는 별도 계약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계하는는 사항이며,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 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하며,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계약이 불가함.

● 발코니 확장 선택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는 경로 등이 생김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홀등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 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시, 가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더라도 미확상세대의 발코니 사용 및 우천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모델하우스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다중 이용시설 등의 식내 공기질관리법 제6조에 의거 주택의 식내공기질의 측정결과 그 측정결과는 주민 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관리 사무소 입구 게시판 및 각 공동주택 출입문에 공고할 예정임.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단지내 시설물의 변경, 향 · 층에 따라 일조권, 환경권, 도로소음발생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건물 외관 구성상 일부 세대의 발코니 등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

● 건축물의 외관 및 세대 측벽에 당사 브랜드용 LED 광고 및 조명이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주민운동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함.

● 주민공용시설은 입주민 관리규약에 따라 상이하게 운영될 수 있음.

● 도시가스시설은 단지내 필요한 시설로서 향후 정압실 및 부지제공에 대한 계약의 의무가 입주민에게 있어 본계약에 동의한 것으로 갈음하며,인입위치 및 설치등은 지역가스 공급업체와 별도 협의하여 위치의 수정 및 변경이 될 수 있음.

● 이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야간 경관용 조명,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및의 산란 에 의한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본 이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지이가 있을 수 있음.(분양가 영향 없음)

● 청약 및 계약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및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대한주택보증㈜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본이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주택법 시행규칙 제 11조 4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지 아니함.

▣ 본 주택은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보증서 번호	보 증 금 액 (단위:원)	보 증 기 간
제01212009-101-00042003호	340,534,460,000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일 포함)까지

▣ 대한주택보증(주)의 보증약관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이 아닌 채무 및 전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의 범위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 제1항 제1호 가호에 따라 주택사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입주금의 환급 책임을 부담합니다.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전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전쟁,내란 및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택부지가 주택분양 계약을 이행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세무지가 대물변제,지명,이중계약 등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한 정상계약자가 아닌 지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 납부계좌(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시에서 지정한 계좌)로, 보증회사가 입주금 납부계좌를 변경, 동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알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 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잔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되는 입주금

7) 보증채권자가 주택공급에관한한규칙 제26조 제4항 제3호의 기준공정에이파트인 경우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 제외)의 50%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인 때, 연립주택 및 단독주택의 경우 지붕의 구조가 완성된 때를 말한다)후에 납부하여야 할 입주금을 기준공정전에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9)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10)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1)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2)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택부지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할 입주금

13) 주택부지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금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4) 입주자모집공고시에 명시되지 않은 사양신변품의(예시:홈오토, 발코니시시, 미이니스즙선 부위, 기타 마감자재공시 등)과 관련한 금액

15) 보증채권자가 제8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 7조의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② 보증회사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전여입주금 및 제항 제4호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항 제8호에 해당하는입주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중 전체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사 업 주 체	시 공 회 사
상 호	명곡이파트 장비사업조합	두산건설 주식회사
주 소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28-1번지 부일빌딩 3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05-7
등 록 번 호	609-81-60110	102-81-07754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 분	회 사 명	감 리 금 액	비 고
건 축 감 리	주식회사 가상이엔지(건축사사무소)	3,639,819,824원(부가세 별도)	
전 기 감 리	주식회사 한국코이엔지(..이하)	550,457,000원(부가세 별도)	
통 신 감 리	주식회사 건양엠이씨	406,000,000(부가세 별도)	
소 방 감 리			

▣ 견본주택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상남동 78-4번지 두산위브 견본주택(분양문의 : 055-263-0050)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공급회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문의 : 055) 263-0050

두산 We've

www.weveapt.co.kr